

해외발주처에 대한 직접 보증 극복 과제

- 건설공제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기획조정실 | 이정섭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조합원의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발주자에 대한 직접보증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약 1년 반 동안 해외보증사업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크고 작은 성과를 얻었지만 해외 발주에 대한 직접보증은 지금 현재에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 기계설비 공사업도 해외공사의 수주량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우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발주처는 공제조합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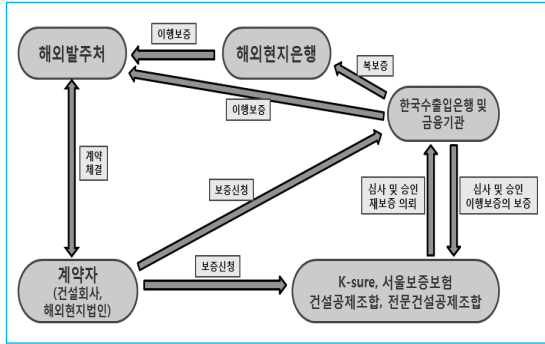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공제조합’은 일본의 ‘동일본건설업 보증(주)’ 등의 시스템과 유사할 뿐, 서양의 보증 회사와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다. 따라서 해외의 발주처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이 어떠한 회사이며, 보증금을 얼마만큼 잘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풀어내고자 해외신용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해외발주처는 Bank Guarantee를 원한다.

해외건설공사 계약에서 준용되는 계약조건

은 주로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에서 발행한 국제표준 계약조건을 준용한다. FIDIC은 총 7가지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설공사와 관련한 책은 2가지(Construction, Red Book, 1999 / EPC, Turnkey, Silver Book, 1999) 이다. 이 책에서 모두 보증서에 관한 조건을 열거하는데 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는 주로 ‘Bank Guarantee’ 조건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Bank Guarantee’, ‘Surety Bond’ 중 하나를 사용한다. ‘Surety Bond’는 주로 “Financial Institution”에서 발행하는데 이는 보험회사를 가리키며 ‘Conditional’하여, 보증금 청구가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를 따져 보증금(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Bank Guarantee”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발행하고, 이는 ‘Unconditional’하다. 즉, 보증금 요청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건설공제조합은 외국에서 이해하는 보통의 보험회사 “Financial Institution”도 아니고, 그렇다고 “Bank”도 아니다.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Bank” 보다는 “Financial Institution”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수주하는 해외공사(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Unconditional’한 ‘Bank Guarantee’를 원한다.

[해외건설보증의 형태 및 구조]



셋째, 은행 간 사용하는 고유의 계좌가 없다.

보통의 해외발주처는 그 나라 현지은행 또는 현지국책은행(현지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받는데, 그 현지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의 보증서를 받고 발주처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건설공제조합은 우리나라의 은행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현지은행과 건설공제조합 간 'Account(계좌)'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 청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은행이 현지은행에 보증금을 송금하고, 현지은행이 이를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끼리는 서로의 '계좌'가 항시 개설되어 있어, 단지 여기에 돈을 예치시키면 현지은행은 언제든지 출금을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며, 이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세계의 은행에서 이를 받아 줄지는 의문이다.

넷째, 외화수급한도가 없다.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비중있는 것은 외화의 수급역할이다. 즉, 외화보유량이 많으면 들어올 외화에 대한 공급을 미루거나 공급한도를 늘이며, 반대로 외화보유량이 적으면 공급을 받거나 수급한도를 늘린다. 이러한

통제로 외환위기, 환율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외화보증은 한국은행에서 언제든지 외화가 나갈 수 있는 성질로 보고 우발부채로 잡는다. 이 때문에 해외계약외화보증 시, 한국은행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 건설공제조합에서 해외 직접 보증을 취급한다면 일정부분 외화를 수급할 수 있는 한도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보증은 그 금액이 상당히 높고 리스크가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은행, 보험사, 재보험사 등만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부여하였는데, 건설공제조합에게도 이 한도를 부여할지는 역시 의문이다.

다섯째,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언급한 '계좌'도, 네 번째 문제에서 언급한 '한도'도 없이 해외보증에 관한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재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는 재보험사가 있다. 우리나라도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가 있으며, 재보험사 간에는 외화 송금이 가능하고, 그 한도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건설공제조합이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들고, 코리안리가 해당 국가의 재보험사에 송금을 하고, 그 국가의 재보험사가 현지은행에 송금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 역시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나, 만약 이 방법을 택한다면 그 수수료는 엄청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발주처에 대한 직접 보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조합도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여러 조합원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